

간호학과 학생지도 운영내규

제정 : 2009.10.01

개정 : 2012.06.01

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적용범위) 학과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학생별 지도교수제와 학년별 담당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구성) 학과장은 교수회를 거쳐 간호학과의 교수 전원을 학생의 지도교수로 분담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3조(학생지도)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학생활동 및 학업을 지도한다.

1. 학사지도 - 성적, 수강신청 및 변경, 학점관리 등
2. 생활지도 - 생활관 지도, 학교생활지도, 동아리활동 지도, 멘토링 지도
3. 진로지도 - 취업 상담, 추천서 발급, 경력 및 자격 관리
4. 기타 학생활동 및 학업에 관한 사항

[제목 변경 2023.10.16.]

제4조(학생별 지도교수제) ①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상담시간을 계획하여 상담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과 취업 시까지 지도한다.

③ 학생상담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차후 학생 지도 시 참고한다.

④ 상담 관련 자료는 학생의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영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
⑤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학교의 행정 절차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고, 차후 학생지도 시 참고한다. 단, 집단상담 운영결과는 학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16.>

⑥ 필요시 지도교수는 대학내 학생 관련 부서 및 외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16.>

제4조의2(학생지도 위원회) ① 학과는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학과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을 임명한다.

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학생 행사에 대한 논의 및 주관
2. 학생 복지시설 점검
3. 재학생 의견 수렴 및 중재
4. 학생 단체 자치활동 지도 및 관리(학생회 포함)
5. 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6. 학생 상담 관련 사항
7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8.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9. 취업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0. 장학금 관련 사항
11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
[조문 신설 2023.10.16.]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24.03.01.>

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3.01.>

제5조(학년별 담당교수제) ① 교수회에서는 매년 말 다음 년도의 학년별 담당교수를 지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과장을 포함한 학과의 모든 교수는 학년별 담당교수로 활동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학년별 담당교수는 학년별로 시행되는 행사 및 단체 활동을 지도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